

업 무 협 약 서

제1조(목적)

안성시 시설관리공단과 시흥시 시설관리공단과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상호 기술정보 교류를 통하여 각 기관의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규정준수)

각 공단은 상호 협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대기관의 제규정을 준수한다.

제3조(유효기간)

본 협약은 약정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약정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한 중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약정은 지속하는 것으로 본다.

제4조(내용)

- ① 각 시설관리공단의 평생고객으로서 상호 협력 및 업무에 협조
- ② 각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의 점검 및 고객 모니터링 상호 협력
- ③ 각 공단의 업무협력 및 정보공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
- ④ 상호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정보 교류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
- ⑤ 직원 업무역량 강화 및 시 발전에 기여한다.

2017년 11월 22일



안성시설관리공단

이 사 장 박 상 기



시흥시설관리공단

이 사 장 천 석 만



김포시설관리공단

이 사 장 조 성 범